

## 학사지도교수 운영 규정

제정	:	2003. 10. 1.
개정	:	2013. 1. 1.
개정	:	2013. 9. 1.
개정	:	2016. 8. 1.
개정	:	2018. 5. 21.
개정	:	2020. 2. 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강대학교 학칙 제66조에 의거, 교수와 학생간의 친밀한 유대관계에서 학생들의 학업방향 및 진로설정에 도움을 주고, 학생활동 전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내실 있고 알찬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학사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① 신입생 지도교수는 각 학과별 소속교수 전원이 균등 분담하여 1년간 지도한다.  
② 전공이 확정된 재학생은 각 전공별 소속 교수가 분담하여 지도하되, 각 전공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분담한다.  
③ 재학생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학생을 졸업 시까지 연속적으로 지도한다.

**제3조(임명)** ① 지도교수는 학부장이 배정하되 본교 교원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 2. 17.>  
② 학부장은 지도교수가 불가피한 사정(퇴직 또는 장기간 공석, 또는 지도교수와 학생간의 협의를 통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학생들을 재분담하여 지도교수를 재배정한다.

**제4조(임무)**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담당학생에 대하여 개별면담 또는 집단면담을 실시한다.
2.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하여 지도하되 특히 학사제도(전공 선택, 전공 및 소속변경, 복수전공, 학점관리, 수강신청 등)에 대하여 중점지도 한다.
3. 전공과 연계성을 가진 소집단 학술모임 등을 유도하여 학업의욕을 높이고 나아가서 전공 결정이나 진로계획에 도움을 준다.
4. 대학생활에 있어 특별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한다.
5.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중인 학생, 학사경고 학생 등 특별지도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반드시 특별면담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정보시스템 (별지 1)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면담 지도)** 지도교수는 매학기 2회 이상 개별면담(집단면담 포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정보시스템 (별지 1)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외 활동)** 담당 학생들이 연구 활동, 과외활동, 수련회 등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소정양식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학지원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 협의)** 지도교수의 임무 수행 중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학부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교학지원처장과 협의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1. 학생지도 관계로 교학지원처장 또는 학교 당국에 보고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할 때
2. 분담학생에 대한 포상 또는 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3. 학년별 집단면담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할 때

**제8조(학사지도관리위원회)** ① 학생의 학사지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사지도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학사지도관리위원회는 교학지원처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교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③ 학사지도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사지도교수제 실적 종합 및 제도 개선
2. 학업 위기 학생 관리 방안 마련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제9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종합정보시스템 입력양식)

## 생활 상담 내역 Report

년도	학기	학번	이름	방문일자	상담자	상담구분
상담 주제						
상담 내역						
처리 결과						